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1)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	법 제20조 제2항제2호	5,000	10,000
	2)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20조 제2항제2호	500	1,000
나.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·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	1)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	법 제20조 제2항제3호	5,000	10,000
	2)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20조 제2항제3호	500	1,000
다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	1)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	법 제20조 제2항제4호	5,000	10,000

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2)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20조 제2항제4호	500	1,000
라.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1)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	법 제20조 제3항	1,500	3,000
	2)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20조 제3항	150	300
마.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	법 제20조 제4항	50	100
바.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	1)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	법 제20조 제2항제6호	5,000	10,000
	2)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20조 제2항제6호	500	1,000
사.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	1)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	법 제20조 제2항제7호	5,000	10,000
	2)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20조 제2항제7호	500	1,000

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·물건을 제출한 경우				
아.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1)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	법 제20조 제1항	10,000	20,000
	2)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	법 제20조 제1항	2,500	5,000